

창원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가단1183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대철

변 론 종 결 2022. 5. 11.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의 2018. 10. 17.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10. 19. 접수 제315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의 각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2018. 9. 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F, B(채무자)이 있었다. 상속인들은 2018. 10. 17.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망 E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고, 2018. 10. 19. 피고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인 2018. 10. 17.경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G은행에 11,550,000원 및 7,605,000원, H조합에 20,259,000원, 주식회사 A1) 에 21,660,000원 및 9,554,000원, I에 309,000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B은 2020. 11. 30. 창원지방법원 2020하단1009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4호증, 을 제1부터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J기관장, 한국은행 총재에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채무자인 B이 망 E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 및 B의 상속분인 2/7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부인의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이에 대해서 피고는, 망 E은 생전에 B의 카드대금 등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었는데, 이는 B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결국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갖는 상속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룬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던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이에 관해서 본다.

위 인정근거에 의하면, 2002. 12. 20.부터 2010. 1. 4. 사이에 망 E 혹은 B 명의의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B이 부담하고 있던 합계 38,097,342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변제되었던 점, 이에 대해서 B과 그 형인 F은 ‘아버지인 망 E이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 무통장입금증은 망 E(혹은 그 배우자인 피고)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금융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신청서가 망 E 명의로 작성되기도 하였던 점(을 제5호증의 2)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망 E은 생전에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을 증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B은 위 증여액을 고려하더라도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경우 그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같은 인정근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21. 1. 29. 기준 감정가격은 114,916,340원으로 보이고, B에게 위 돈이 증여된 시점을 감안하였을 때 상속개시 시점인 2018년을 기준으로 한 증여가액은 44,226,167원²⁾ 정도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면 B의 상속분은 45,469,287원(= 159,142,507원³⁾ × 상속지분 2/7. 원 미만 버림) 정도가 된다. 그런데

위 금액은 B이 받은 특별수익(증여)인 44,226,167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4) 결국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더라도 이를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재용

1) B에 대한 파산선고로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기 전의 ‘피고’이다.

2) = 증여액 38,097,342원 × (상속개시당시인 2018년 GDP디플레이터 104.756) ÷ (증여당시인 2009년 GDP디플레이터 90.239). 원 미만 버림

3) = 이 사건 부동산의 2021년 시가 114,916,340원 + 특별수익자 B에게 증여된 44,226,167원

4) 차액 1,243,120원(= B의 상속분 45,469,287원 - 증여액 44,226,167원)이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시점은 상속개시 당시인 2018년도가 아닌 2021년인데, 상속개시 시점을 감안하면 B의 상속분은 남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다.